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98 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김성환·김정호·허성무

윤종오 • 백승아 • 박지혜

이소영 · 서왕진 · 권향엽

황정아 · 최민희 · 허 영

김남근・김기표・차지호

복기왕・정진욱・김 윤

위성곤 · 오세희 · 전현희

강경숙 · 김원이 · 김동아

이재관 · 남인순 · 김영배

박희승 • 정태호 • 양부남

문금주 · 김영화 · 박정현

이광희 • 윤준병 • 이재강

역태영 · 송재봉 · 박범계

문대림 • 임미애 • 박홍근

민형배 • 임광현 • 안호영

김태년 • 추미애 • 김용만

황명선 • 이기헌 의원

(5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

대한 규정을 두어,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 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,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"를 "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"로 한다.

제11조의2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 말한다)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1조의2제6항"을 "제11조의2제7항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제11조의2제9항"을 "제11조의2제10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"을 "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
3. "전기자동차"란 전기 공급원	3		
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			
지를 동력원(動力源)으로 <u>사</u>	<u>사용</u>		
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	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		
	있는 자동차를 말한다.		
4. ~ 10. (생 략)	4. ~ 10. (현행과 같음)		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	
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⑤	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⑤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</u>		
	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		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	
	라 양방향 충전(충전과 방전을		
	말한다)설비를 포함하여 설치		
	하여야 한다.		
<u>⑥</u> ~ <u>⑩</u> (생 략)	<u>⑦</u> ~ <u>③</u> (현행 제6항부터 제1		
	2항까지와 같음)		
제13조(자금지원을 위한 재원) 제	제13조(자금지원을 위한 재원)		
6조부터 제8조까지, 제8조의2,			
제10조, 제11조제2항 및 <u>제11조</u>	<u>利11</u>		

<u>의2제6항</u> 에	따른	지원여	게 필요
한 자금은	다음 🥻	각 호	의 재원
에서 지원할	수 있	l다.	

1. ~ 3. (생략)

제16조(과태료) ① <u>제11조의2제9</u> 저 <u>항</u>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<u>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</u>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
3	(생	략)

<u> 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에16조(과태료) ① <u>제11조의2제10</u>
<u>ठ</u> ो
②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
- .
③ (현행과 같음)

ス이9계7하-____